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09호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0호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12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14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공고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5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5호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7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79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 사항 알림 19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3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4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5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기 타

-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2-2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61

회 람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0호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지정취지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국가하천

하 천 명	금지사항	구 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아 라 천	낚시	양안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33.8km
	야영 취사		청운교 ⇄ 계양대교(남측, 북측 경관도로)	24.0km
굴 포 천	낚시 야영 취사	양안	갈산동 404-12 ⇄ 삼산동 106-24	6.8km
		좌안	삼산동 302 ⇄ 삼산동 325-312	0.7km
		우안	삼산동 301-1 ⇄ 삼산동 325-446	0.4km
		양안	당미1교 ⇄ 굴현보	2.6km
	낚시	양안	체절수문 ⇄ 상야교	3.0km
	낚시	좌안	중앙교 ⇄ 천상교	1.2km

○ 지방하천

하천명	금지사항	구분	지정구간	지정길이
공촌천	낙시 야영 취사	양안	공촌2교 ⇔ 공촌천교	5.4km
		좌안	공촌천교 ⇔ 서해수문	1.6km
심곡천	낙시 야영 취사	양안	청중로 봉수교 ⇔ 보존지역 일대	9.6km
		우안	보존지역 일대 ⇔ 서해수문	0.9km

나. 낙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낙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낙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낙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벌칙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하천법」 제9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광역시 낙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하천법 시행령 별표5] ① 1차 위반 : 100만원 ② 2차 위반 : 200만원 ③ 3차 위반 :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함.

붙임 위치도 1부.

【붙임】 금지지역 위치도

1. 아라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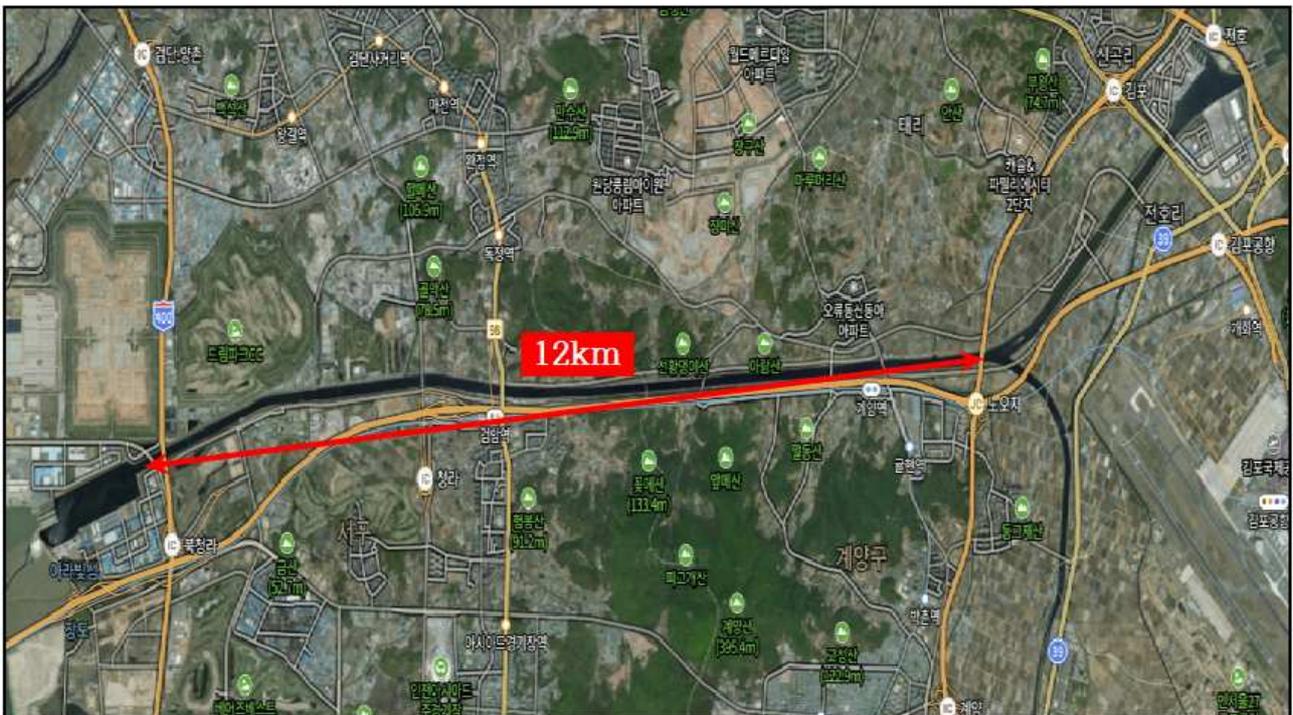
○ 금지사항 : 낚시

-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안 제방 33.8km (김포시 구간 제외)



○ 금지사항 : 야영, 취사

- 청운교 ⇄ 계양대교 남측, 북측 경관도로 좌우안 24.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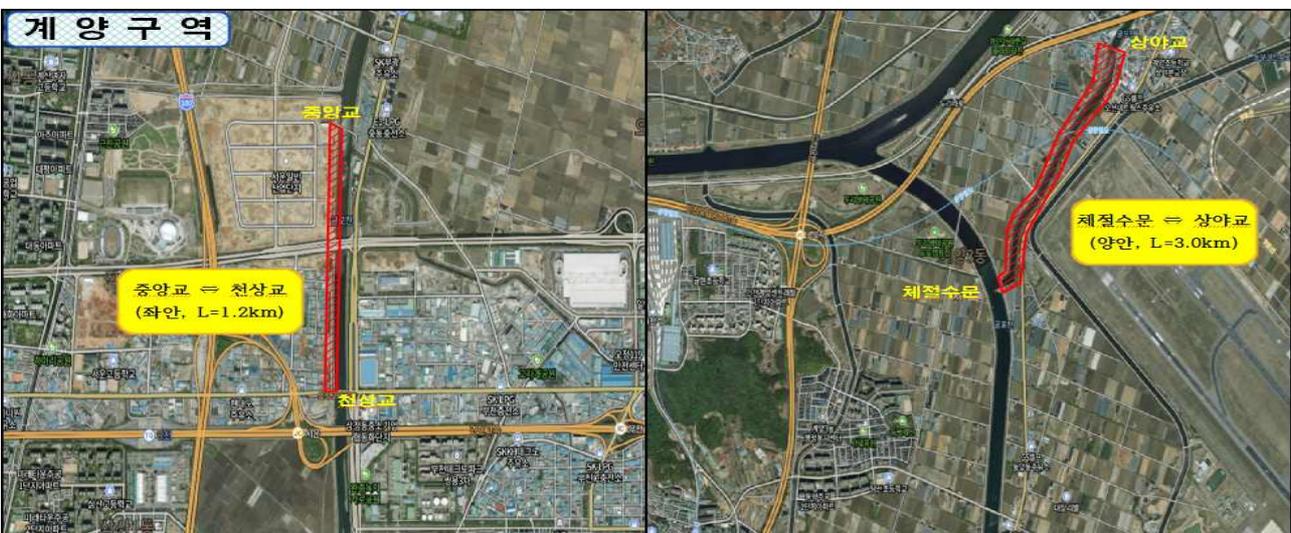


2. 굴포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 금지사항 : 낚시



3. 공촌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4. 심곡천 낚시 등 금지지역 위치도 [변경]

○ 금지사항 : 낚시, 야영, 취사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비전이엔테크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32호)	김상곤	2020. 5. 20.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70 (고잔동,88블럭7롯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58(논현동) NIC지식산업센터 905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14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2. 9.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9.(수) ~ 2022. 2. 23.(수) 14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부과금액
김*엽	66. 9.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길	2021. 8. 15. 3:00 인천국제공항 3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	이사감	과태료 103,000원 최초 : 100,000원 가산금 : 3,000원
이*형	61. 5.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77번길	2021. 8. 15. 23:3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마스크 미착용 (계도 불이행)	폐문부재	과태료 103,000원 최초 : 100,000원 가산금 : 3,000원

4. 공고내용

- 가. 위 공고대상자는 **2022년 2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 항공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만일 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등기압류 조치 및 신용정보 기관에 개인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각종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1207호 / 인천광역시청 신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및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2. 9.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칭	변경 사항			변경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0-0- 인천광역시-68호	인천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자	김형태	박정하	2022.2.8.
제2000-0- 인천광역시-67호	인천청소년 교향악단	대표자	채한석	김용호	2022.2.9.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347번길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32번길9, B동 3120호	

 신규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록 연월일	등록 구분
제2022-0- -인천광역시- 2호	한국청소년 문화예술협회	유희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558-1, 301호	- 공연 및 전시회 발표 등 - 문화예술소외지역 지원 사업 - 지역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2022.2.7.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5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제1차,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개요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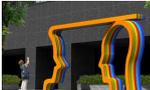
구분	일시/장소	안건	심의결과
1차	1. 24.(월) 10~13시 신관 18층 회의실	9개소 29작품 (조각22, 회화4, 부조3)	가결 7작품, 부결 22작품
2차	1. 28.(금) 10~13시 신관 18층 회의실	10개소 28작품 (조각10, 회화18)	가결 13작품(조건부 3, 권고 1 포함), 부결 15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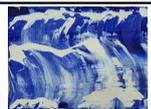
2.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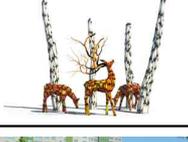
<첨부>

□ 1차 심의 29작품 중 가결 7작품, 부결 22작품

연 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C8-2-1블록	부조	Sculptural Drawing_Fiat Lux#1		○		
	2		부조	Sculptural Drawing_Fiat Lux#2		○		
2	3	중구 중산동 1871-1번지	조각	세상의 구조 CHESS-2108			○	
	4		조각	CLOUD FLOWER			○	
3	5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조각	Rising wave			○	
	6		조각	자연의 숨결		○		
	7		조각	Composition 2021			○	
	8		조각	술			○	
4	9	중구 운남동 1766-2	조각	Meta Seed			○	
5	10	중구 신흥동1가 34-29	조각	사이-대화			○	
6	11	서구 청라동 4-19	조각	향기로운 추억-2021			○	
	12		조각	Mixture		○		
	13		조각	만개-Ⅱ (滿開-Ⅱ full bloom)			○	

7	14	미추홀구 도화동 377-1	조각	기도하는 마음			○	
	15		조각	니케의 머리 비너스의 꿈			○	
	16		회화	자연율-심상풍경 I			○	
	17		회화	자연율-심상풍경 II			○	
8	18	부평구 부평동 758-31	조각	상상의 숲 - Dreaming Pine Tree		○		
9	19	중구 운서동 2955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각	Welcome -Greeting Men			○	
	20		조각	Gate			○	
	21		조각	Wave		○		
	22		조각	Sound of Nature - Peace			○	
	23		부조	Eternal Light- 21c. Paradise			○	
	24		회화	사유의 흔적 2018-11			○	
	25		회화	사유의 흔적 2018-26			○	
	26		조각	Be Happy		○		
	27		조각	Rest			○	
	28		조각	Moments Together			○	
	29		조각	A Rainbow Girl			○	

□ 2차 심의 28작품 중 가결 13(조건부 3, 권고1 포함) 부결 15작품

연 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작품이미지	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서구 청라동 153-2	회화	삶-풍경...愛 - 1		○		[조건부]
	2		회화	삶-풍경...愛 - 2		○		[조건부]
	3		회화	도봉산 봄 향기			○	
	4		회화	도봉산 가을 빛			○	
2	5	연수구 송도동 396-11	조각	미래를 향하여			○	
	6		조각	하늘나무		○		
	7		조각	파도 사이로			○	
3	8	서구 청라동 97-1	조각	신발 끈을 매다			○	
4	9	부평구 부개동 145-10	조각	Eternity		○		
	10		조각	Deer		○		[조건부]
5	11	계양구 작전동 765	조각	Garden in my dreams		○		
	12		조각	A sweet tree		○		[권고]

6	13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상업1블럭6롯데	회화	Sunflower			○	
	14		회화	Yellow - Duck			○	
	15		회화	관계, 점에서 점으로		○		
	16		회화	관계, 점의 이동		○		
	17		회화	코끼리			○	
	18		회화	CAR			○	
	19		회화	네오 유토피아 - 거북			○	
	20		회화	네오 유토피아 - 만남			○	
7	21	부평구 부개동 152-1 외	회화	7월 어느날 - 티타임 1		○		
	22		회화	7월 어느날 - 티타임 2			○	
	23		회화	Love of the sky			○	
	24		회화	Relation-관계			○	
8	25	남동구 간석동 762-3	조각	꿈의 형태		○		
9	26	연수구 송도동 29-8	회화	사라진 단원들(Disappeared members)			○	
	27		회화	겨울 호랑이 냄새		○		
10	28	남동구 구월동 341-12	조각	발아+대지(大地)로부터~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 (주)바우컨선탄트
- 2) 대 표 자 : 김용년, 김종오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59, 308호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4호
- 6) 등 록 일 자 : 2022. 2.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 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1) 업 체 명 : (주)이수이티씨
- 2) 대 표 자 : 강대성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2, NIC지식산업센터 1010호(논현동)
-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 5) 지 정 번 호 : 제 56 호
- 6) 지 정 일 자 : 2022. 2.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 2. 9.

인천광역시장

변경 등록 사항 :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당초	2013-0-인천광역시-14호	사단법인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2층	권혁철	인천저널 발간, 인천언론인 시상 인천지역현안세미나, 청소년 기자아카데미	대변인실
변경	상동	상동	상동	박희제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7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 사항: 단체명칭

○ 단체명: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16-0- 인천광역시 -1호	(사)인천디자인 기업협회	단체명칭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 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79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판결 전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 사 건 : 대법원 2022쿠1002 집행정지
- 당 사 자
 - 신 청 인 : 인천광역시장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의회
- 결 정 일 : 2022. 2. 10.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1. 12. 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시 까지 이를 정지한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3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다. 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라.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 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기능, 위촉위원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다. 비용추계서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호·문자·음성·음향”을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로, “등의”를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콘텐츠산업”을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제목 “(제작지원)”을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활동”을 “제작 및 사업화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를 “공동위원장 2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를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산업소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따라 -----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콘텐츠”란 <u>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p> <p>2. ----- <u>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u> ----- <u>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u> ----.</p>
<p>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u></p>	<p>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u>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u>----- ----- <u>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p>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5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

----- 제작 및 사업화 활동 -----

-----.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 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 설>

1. ~ 5. (생략)

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심의·자문하기 -----

② -----

----- 심의·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2. (생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

까지와 같음)

제14조(구성) ① ----- 공동위원장 2인과 -----
 -----.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

③ ----- 문화관광국장-----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되, 한 차례만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

② -----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
 -----.

제1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생략)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동위원장 -----
-----.

④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input type="radio"/>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input type="radio"/>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input type="radio"/>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input type="radio"/> 제20(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input type="checkbox"/> 「콘텐츠산업 진흥법」 <input type="radio"/> 제2조(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건본시

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투자조합 운영지원(제6조의 2)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제8조의 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 이후 예산확보를 통해 5년 이내 관련 신규사업 추진
- 투자조합운영사업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계획('21년 8월) 반영

※ 조성계획 : 5년간 총 조성액 1,250억원(시50, 모태950, 민간250)

→ 시 재정여건 및 지역 산업규모 등을 반영하여 출자액 최소화

(단위:억원)

구 분	소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시출자액	5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조성(목표)액	1,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운영기간	8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 해외진출사업 :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사업비 확대

※ 기존 사업에 해외진출 관련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금액 : 7,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800	1,500	1,550	1,550	1,600	1,600
투자조합운영	문화콘텐츠산업 펀드운용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해외진출지원	맞춤형 사업화 지원	2,800	500	550	550	600	6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 사업비는 사업성과 분석, 수요조사, 국비매칭사업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고 은 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일반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4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정비(안 제10조제2호, 별표 1, 별표 2)
- 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용어 통일(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5조)
- 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
(안 제14조제3항, 별표 3)
-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조정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제11조의 제목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을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P \times R) \times \frac{BLi}{BLS}$$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 R : 물가상승률
-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m³/일) × [BOD+ TOC+ SS농도(mg/l)] / 1,000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m³/일) × [BOD+ TOC+ SS농도(mg/l)] / 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구분	대상	산정방법
오염농도	폐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TOC + SS) = 285mg/l
	사업장 중 기숙사의 오수	(BOD + TOC + SS) = 570mg/l
	주거지역 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mg/l
유량	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량
	주거지역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m ³ /인·일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 = M \times \left\{ 0.3 \frac{\sum_{i=1}^n BLi}{\sum_{i=1}^n BLi} + 0.7 \frac{\sum_{i=1}^n F(Li)}{\sum_{i=1}^n F(Li)} \right\}$$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times C_i$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_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m³/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_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 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 40이하	40초과 ~ 60이하	60초과 ~ 80이하	80초과 ~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kg)

$$= \{ \text{유량} \times (\text{BOD} + \text{TOC} + \text{SS} + \text{T-N} + \text{T-P}) \} \times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a \cdot Q_i \times \left(\frac{b \cdot \text{BOD}_i + c \cdot \text{TOC}_i}{2} + d \cdot \text{SS}_i + e \cdot \text{T-N}_i + f \cdot \text{T-P}_i \right)$$

(가) Q_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구 분	a	비 고
폐 수	1.5	
오 수	1.0	

2) BOD 계수

BOD 값 (mg/l)	b	비 고
BOD ≤ 200	1.0	
200 < BOD ≤ 300	1.1	
300 < BOD ≤ 400	1.2	
400 < BOD ≤ 500	1.4	
500 < BOD ≤ 600	1.6	
600 < BOD	2.0	

3) TOC 계수

TOC 값 (mg/l)	c	비 고
TOC ≤ 180	1.0	
180 < TOC ≤ 270	1.1	
270 < TOC ≤ 360	1.3	
360 < TOC ≤ 450	1.6	
450 < TOC ≤ 540	2.0	
540 < TOC ≤ 630	2.5	
630 < TOC	3.0	

4) SS 계수

SS 값 (mg/l)	d	비 고
SS ≤ 200	1.0	
200 < SS ≤ 300	1.1	
300 < SS ≤ 400	1.2	
400 < SS ≤ 500	1.4	
500 < SS ≤ 600	1.6	
600 < SS	2.0	

5) T-N, T-P 계수

T-N 값 (mg/l)	T-P 값 (mg/l)	e, f	비 고
T-N ≤ 40	T-P ≤ 4	1.0	
40 < T-N ≤ 100	4 < T-P ≤ 8	1.1	
100 < T-N ≤ 200	8 < T-P ≤ 16	1.2	
200 < T-N ≤ 300	16 < T-P ≤ 32	1.4	
300 < T-N	32 < T-P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 (기숙사 4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있다.

제25조(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
업자 등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물환경보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 제32조(배출허용기준) ○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p><input type="checkbox"/>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

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1. 4. 13.>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3.>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

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구 분	수질기준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유기탄소량 (TOC)(mg/L)	15이하	15이하	25이하	25이하
부유물질 (SS)(mg/L)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총질소 (T-N)(mg/L)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총인 (T-P)(mg/L)	0.2이하	0.3이하	0.5이하	2이하
총대장균 군수(개/mL)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생태독성(TU)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5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계양구, 서구 지역 시민들에게 매립지 악취 외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추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자금 용자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이라는 문구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 서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생략)</p> <p>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p> <p>1. (생략)</p> <p>2. <u>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 <u>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u></p>	<p>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u> ----- : <u>서구</u> ----- ----- ----- ---</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p><input type="checkbox"/> 「환경정책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p><input type="checkbox"/> 「악취방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1.12>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권고적 형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

기 타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2-2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인천남동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청신프라자(동암남로26번길 39) 소유자 강*미 등 138명
3. 처분내용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4. 조치명령 기간 : 2022.02.19. ~ 2022.03.22.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3월 22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 *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및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가능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032-870-5267, FAX 032-870-5218)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붙임 1]

연 번	소유자	주소	비 고
1	강*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반송
2	고*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40번길 ***	반송
3	고*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4	구*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5	김*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	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	반송
7	김*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8	김*옥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9	김*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0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1	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22번길 ***	반송
12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3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	반송
14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	반송
15	김*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반송
16	김*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	반송
17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서정로 ***	반송
18	김*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7번길 ***	반송
19	김*숙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	반송
20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21	김*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반송
22	김*석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	반송
23	나*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24	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반송
25	문*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26	민*도	서울특별시 용산 이촌동 ***	반송
27	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반송
28	민*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29	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0	박*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	반송
31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2	박*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33	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	반송
34	박*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아남로26번길 ***	반송
35	박*대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반송
36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	반송
37	배*선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	반송

연 번	소유자	주소	비 고
38	백*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	반송
39	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1길 ***	반송
40	선*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	반송
41	송*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반송
42	송*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	반송
43	신*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44	신*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45	신*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46	신*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반송
47	양*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48	오*수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	반송
49	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0	우*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반송
51	원*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2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동 ***	반송
53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4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5	원*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56	원*종합건설원*두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반송
57	유*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반송
58	유*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59	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60	윤*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61	윤*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반송
62	윤*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63	이*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64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5	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6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7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	반송
68	이*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반송
69	이*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반송
70	이*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반송
71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26번길 ***	반송
72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73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반송
74	이*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반송
75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연 번	소유자	주소	비고
76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68번길 ***	반송
77	이*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반송
78	이*구	충남 금산군 금성면 ***	반송
79	이*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반송
80	이*엽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81	이*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	반송
82	이*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반송
83	이*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반송
84	임*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85	임*규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	반송
86	임*철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87	장*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	반송
88	장*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89	장*영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90	장*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반송
91	전*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반송
92	전*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	반송
93	정*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94	정*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	반송
95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6	정*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반송
97	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82번길 ***	반송
98	정*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반송
99	정*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00	정*중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반송
101	정*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반송
102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3	정*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반송
104	정*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5	정*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06	조*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07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	반송
108	조*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1번길 ***	반송
109	조*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반송
110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	반송
111	조*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12	조*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반송
113	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반송

연 번	소유자	주소	비 고
114	청***건설민*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	반송
115	청***건설민*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116	최*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17	최*혁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반송
118	최*구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19	최*준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	반송
120	최*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반송
121	최*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반송
122	추*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반송
123	한*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	반송
124	한*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반송
125	한*령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26	강*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27	권*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28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29	김*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	반송
130	김*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1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2	김*철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반송
133	김*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반송
134	김*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반송
135	민*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반송
136	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반송
137	박*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	반송
138	박*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반송

[붙임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점검대상	청실프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39)	
관계인	강 ○ 미 등 138명	
조치명령 기간	2022.02.19. ~ 2022.03.22.	
소방시설 등의 종류	지 적 사 항	관련법령
소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장소 스프링클러헤드 반경불량으로 증설요함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마트 출입구 앞 1개, 마트 내 사무실 1개 - 3층 우측 계단실 앞(330호 사무실 앞) 1개 ○ 다음장소 스프링클러헤드 함몰상태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마트 내 안쪽 소상고 앞 1개, 탈의실 앞 2개 ○ 3층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및 탬퍼스위치 선로 분리상태로 조치요함. ○ 지하 2층 프리액션밸브 2차측 밸브 잠금상태.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전용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밧데리 불량 1개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경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감지기 적응성 불량 3개소.(열->연기) ○ 다음장소 발신기 누름스위치 불량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2층 주차장 경사로 앞 발신기 1개, 좌측 계단실 내 발신기 1개 - 1층 마트 내 우측 발신기 1개 - 3층 좌측 소화전 1개 ○ 비상방송설비 연동불량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지하 2층 ~ 지상 3층) 내 비상방송 출력시 연동불량상태. - 수신기에서 비상방송설비 엠프로 신호는 넘어가는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피난구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유도등 선로 간선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선관 사용안함. - 쫄대 및 선로만 포설된 상태.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복도 내 유도등 적응성불량 3개소.(피난구 -> 통로)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마트 출입구 1개, 우측 계단실 출입구 1개 - 3층 <청프라자>소사무실 출입구 1개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점등불량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2층 발전기실 출입구 2개, 주차장 내 경사로 앞 1개, 기계실 출입구 1개 ○ 다음장소 피난구유도등 외관상태 불량으로 조치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좌측 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탈락) - 3층 좌측 계단실 출입구 1개(외면표지 변형) ○ 1층 마트 내 거실통로유도등 미설치 1개소.(양면,방향) ○ 다음장소 통로유도등 점등불량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계단 ph층 -> 3층 1개(좌방향) <li style="padding-left: 40px;">3층 -> 2층 1개(우방향) <li style="padding-left: 40px;">1층 -> b1층 1개(좌방향) <li style="padding-left: 40px;">b1층 -> b2층 1개(좌방향) - 우측계단 b2층 -> b1층 1개(좌방향) - 1층 주차장 출입구 앞 경사로 1개(좌방향) ○ 다음장소 통로유도등 철거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2층 -> 경사로 사이 첫번째 1개(전원불량) - 지하 2층 주차장 내 2개(전원불량)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점등불량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내 알람벨브실 앞 1개, 우측 출입구 1개, 314호 - 315호 사이 1개, 303호 - 304호 사이 1개 ○ 다음장소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불량 2개소.(6v-900m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디토폴리스(오피스텔)> 내 317호 우측 1개, 309호 옆 1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30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기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계단실 쪽 3층 출입구 2개(방화문 양쪽), ph층 방화문 1개 ○ 다음장소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상태로 조치요함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계단실 쪽 지하 2층 출입구 1개, 3층 출입구 2개 	소방시설법 제10조

끝.